

#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(안)



하 남 시  
【교육지원과】

# 하남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□ 동의(안) 요지

- 평생학습관이 하남대로 732(신장동)에 설치·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평생교육 관련 기관·단체에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
-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은 물론 우리시 평생교육 진흥과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-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
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# □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하남시 평생학습관(하남대로 732)
- 시설현황
  - 건 물 용 도 : 하남시 평생학습관(교육 및 복지시설)
  - 개 관 예 정 : 2015년 6월중(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유동적)
  - 대지/연면적 : 601.4㎡/1,234.22㎡ (지하1층/지상4층)
  - 주 요 시 설 : 사무실, 강의실, 다목적실 등
- 수탁자 자격기준
  - 하남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

-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 사업소를 두고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평생교육 시설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등록(신고)한 법인

○ 위 탁 기 간 : 3년

○ 위 탁 사 무

-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- 평생학습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
-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
-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제공·홍보 및 학습상담
- 평생학습관 관련 시설물 관리
-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예 산 수 반 : 초기투자비 및 학습관 운영비 지원

- 초기 투자비 : 건물 리모델링, 홈페이지 구축, 사무집기 구입 등
- 운영비 : 인건비, 사무관리비, 프로그램 운영비 등

○ 위 탁 방 법

- 공고에 의한 위탁운영체 공개모집
- 하남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도모

○ 운 영 비 교

구 분	직 영 운 영	민 간 위 탁	비 고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영방침 등 의사결정 신속성 유지</li> <li>○ 사업의 투명성, 건전성 확보 및 유기적 업무협조 가능</li> <li>○ 공공성 확보용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(전문가)</li> <li>○ 다양한 운영 경험과 탄력적 대응</li> <li>○ 별도의 조직 및 인력확보 불필요</li> </ul>	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성 저하에 따른 효율성 저하</li> <li>○ 업무의 연속성 결여</li> <li>○ 전문인력 수급 및 프로그램 개발 지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</li> <li>○ 운영기관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공공성 저해 우려</li> </ul>	

## □ 그간 추진현황

- '14. 07. 24 :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방침 결정
- '14. 11. 05 :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공포
- '14. 11. 18 : 2015년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수립
- '14. 11. 28 :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완료
- '14. 12. 19 : 2015년 평생학습관 운영예산(민간위탁금) 확정

## □ 향후계획

- '15. 2월 중 : 평생학습관 위탁동의(안) 시의회 상정
- '15. 02.~05. :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
- '15. 02.~03. :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운영자 공개 모집
- '15. 4월 중 : 평생학습관 위·수탁 협약 체결
- '15. 6월 중 : 하남시 평생학습관 개관

## □ 주관부서 검토의견

-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곳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며,
- 전문성의 요구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 및 가용인력 부족 등으로 평생학습관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 할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,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 끝.

(붙임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[대통령령 제25751호]

**제11조 (민간위탁의 기준)**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)**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**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□ **하남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** [ 2001·4·16 조례 제609호 ]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수탁 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